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585

발의연월일: 2025. 1. 16.

발 의 자: 강대식 · 고동진 · 박준태

조지연 • 주호영 • 유용원

김상훈 • 배준영 • 이양수

박덕흠 · 김장겸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해·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해·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두도록 하고, 사관학교 의 4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 군의 장교로 임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사법」이나 「경찰대학 설치법」은 학교 재학 중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이나 경찰대학 학비 등을 지급 받은 사람이 군인이나 경찰에 임용된 후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군 가산복무기간이나 경찰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한 경우에는 국비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관학교설치법」은 사관학교 재학 중에 지급된 학비 등의 국비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한 사람이 본인의 귀책사유

로 인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한 경우에는 지급 받은 학비 등을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환수규정을 마련하고 「군인사 법」과 「경찰대학 설치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함(안 제8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학비 등 상환) ①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한 사람이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관학교 재학 중에 지급받거나 면제받은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학비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황하여야 한다.

- 1.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는 제외한다) 외의 사유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2.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을 때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환의무자가 학비등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③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을 포함한다)을 감안하여 제1항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는 학비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학비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8조의2(학비 등 상환) ① 사관
	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
	한 사람이 「군인사법」 제7조
	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중에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관학교 재학 중에
	지급받거나 면제받은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이하 "학비등"이라 한
	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1.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신체
	적 또는 정신적 장애(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u>신체적·정신적 장애는 제외</u>
	한다) 외의 사유로 의무복무
	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
	<u>을 때</u>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u> 상환의무자가 학비등을 상환하</u>
	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③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대학 교의 등록금(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을 포함한다)을 감안하 여 제1항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는 학비등을 산정하여야 한 다.
-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학비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시하 여야 한다.